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북한 해양법 연구

-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양정선

국문초록

2018년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유례없는 행보로 세계는 한반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에 평화수역 조성, 안전어로 보장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으로 연안국들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되는 해양관할권 확대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해양에서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시 원활한 협력 및 상호 발전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주변국들과 분쟁 발생 시 남·북 공동 대응을 위해 해양관할권에 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이 해양관할권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수용 시에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 안보를 추구하고, 그 양상은 여느 약소국과 다르게 능동적이고 독창적이었다. 한편, 대외적으로 관련입장 표명 시는 타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대국의 입장에 편승하거나 주변국이 취하는 입장을 살피는 등 주변정세의 영향을 받아 현실적 안보이익을 추구하며, 그 양상은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약소국의 행태를 보였다.

이로써 우리는 향후 북한과 해양에서의 교류·협력 시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에서의 협력과 해양관할권 관련 남·북한 공동대응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동일한 해양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제로-섬 게임이었던 남·북 관계가 상생, 공영을 위한 원-원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 등을 학습하고,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간 상호 학술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북한, 해양법, 유엔해양법협약, 해양관할권

학 번 : 2015-24364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4
제 1 절 선행연구	4
1.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개념 정의	4
2.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	9
제 2 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18
1. 연구방법	18
2. 분석틀	18
제 3 장 해양관할권에 대한 북한의 태도	23
제 1 절 영해제도	23
1. 영해폭	25
2. 영해기선	31
3. 무해통항	36
제 2 절 경제수역	39
제 3 절 군사경계수역	45
제 4 장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특징	50
제 1 절 영해제도	50
제 2 절 경제수역	55
제 3 절 군사경계수역	56
제 4 절 소결론	57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6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0
제 2 절 시사점	62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63
참고문헌	64
Abstract	69

표 목 차

[표 1] 분석범주	19
------------------	----

그 름 목 차

[그림 1] 분석틀	22
[그림 2] 수용성 및 명확성 분석결과	57

제 1 장 서 론

2018년을 기점으로 세계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유례없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발표된 「4.27 판문점 선언(공식명: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주요내용이었다. 이는 2017년 11월21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의 핵심내용과도 일치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해체에 따른 유엔안보리와 미국 등 국가들의 對北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가능성을 의미한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및 최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서해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며,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 마련 및 안전여로 보장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실시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협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해양이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진출로였다면, 현재는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지상에너지 고갈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라 한다) 챕터으로 해양의 이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동협약 발효 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라 한다)의 범위는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연안국 간 중첩된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 등 분쟁의 주원인이 되었다. 이는 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및 관할권은 곧 도서 영유권, 해저자원 및 해상교통로 등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안국들은 앞다투어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확대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가 간 해양에서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었다(김동수 2018, 1).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해양에서의 인적·물적 확대 시 원활한 협력 및 상호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관할권 관련 주변국들과 분쟁 발생 시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양관할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남·북간 ‘해양’에서의 교류 및 협력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 연평·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수한 사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 국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간헐적으로 있어왔을 뿐이다. 또한 북한 해양법에 관한 연구, 특히 해양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극소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일부 소개되었으나 전반적인 연구실적은 거의 없다. 2000년 이후에는 부분적 연구마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병진 2014, 1-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열람이 가능한 관련 북한 문헌과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북한이 취해 온 국가행위, 북한 해양 관련 국내외 논문 및 문헌 등을 이용해 해양관할권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 본다. 분석 시 유엔해양법협약이 북한으로 수용되어 구체화되는 양상인 ‘수용성’과 이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표명 관련 대외적 공개 양상인 ‘명확성’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성은 북한의 각 범주별 해양관할권에 대한 주장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정합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여느 약소국이 대외정책 선택 시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와 비교한다. 명확성은 북한의 각 범주별 해양관할권에 대한 타국의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관련입장 표명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결정된 정책에 대해 공식적,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여느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와 비교한다. 평가된 수용성과 명확성 점수를 가로축이 수용성, 세로축이 명확성인 좌표평면에 도식하여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적·외부적 요인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2장은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에 대한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선행연구로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의 특징을 분석함에 앞서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협약 상 규정된 해양관할권 관련개념을 살펴보았다. 특히 해양관할권 각 범주별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협약 상 규정에 대한 해석 관련 논의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제2절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분석범주 한정을 위해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유엔해양법협약内外로 구분, 이를 다시 각 제도별로 소분류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수용성’과 ‘명확성’이라는 두 가지 분석기준을 활용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분석틀에 의거하여 영해제도, 경제수역 및 군사경계수역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로 각 제도별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특징 및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외부적 요인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계기로 미진해 왔던 북한 해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차후 남·북간 해양분야 협력 등 관련 정책대안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 1 절 선행연구

1.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개념 정의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국제해양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320개의 조문과 9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가입한 보편적 규범으로 광범위한 해양관련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에서는 해양강대국과 제3국과 간 논란이 많았던 영해의 폭을 12 해리로 확정하였고,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경제적 권한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를 신설하였다. 물론 동 협약이 모든 해양문제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동 협약 상 규정은 대부분 국제관습법 규범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보편적 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과 관련된 국내법 제정 시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이석용 2016, 410-411).

세계 각 국가들은 해양관련 정책 수립 시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각 국의 특수한 사정과 해양에서의 이익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제정한다. 고려되는 이익으로는 국가의 독립, 안위와 관련된 안보적 이유, 통항의 자유, 해양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이 있다. 최근 연안국들이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 이를 바 ‘해양영토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과도한 해양관할권 주장 및 입법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이석용 2015, 12).

연구에 앞서,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되어 있는 개념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영해기선, 무해통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개념을 알아본다. 첫째, 기선(baseline)이란 연안국의 해양관할수역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점을 뜻한다. 즉, 기선은 내수와 타 수역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하고,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에는 저조선(low-water line)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normal baseline)과¹⁾ 해안선의 굴곡이 복잡하거나 깊이 잘려 들어가 만을 형성하거나, 인근 해안을 따라 도서가 산재해 있는 경우 적절한 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straight)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라 한다)는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직선기선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D.P.O' Connell 1983, 202-206).²⁾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는 이 판결문을 받아들여 직선기선에 관하여 직선기선 설정 시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서는 안 되고, 기선 내의 수역은 내수제도에 종속되도록 충분히 본토에 인접해 있어야 하며, 등대 등의 항구적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간출지는 기점에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직선기선 적용 시 관계지역에 특수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중요성이 장기 관행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순 2008, 95;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이 밖에 만구폐쇄선이 기선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³⁾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선 측정 시 만(bays)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연안이 단일국가에 속한 것으로 단순한 굴곡이 아니라 몰입 정도가 심해서 만 입구의 양끝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만 내부수역 면적이 커야한다.⁴⁾ 만구폐쇄선의 길이가 24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을 직선기선으로 하여 그 육지

1)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

2) 직선기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역의 경계획정은 항상 국제적인 측면을 가지며, 그것은 국내법을 통해서 표시된 연안국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직선기선의 설정은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되며, 당해 해역과 그 해역을 나누거나 또는 둘러싸고 있는 지형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기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기선 내에 있는 수역이 내수제도에 종속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그 실체와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해 입증되는, 당해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유엔해양법협약 제9조, 제10조.

4)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1, 2항.

쪽을 내수로 인정하고,⁵⁾ 만구폐쇄선이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해리 직선기준선을 만 안에 긋되, 24해리 직선으로 가능한 최대범위의 수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⁶⁾

한편 역사적 만이나 유엔해양법협상 제7조 직선기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0조의 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⁷⁾ 즉 24해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만의 입구를 연결하는 선을 직선기선으로 하며, 그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발해만(45해리 만구폐쇄선), 러시아의 피터대제만(120해리 만구폐쇄선) 등 약 20개국이 역사적 만을 주장하고 있다(김현수 2010, 37).

실제로 기선을 긋는 일은 연안국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자국의 해양이익 극대화를 위해 직선기선의 남용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선의 정당성은 국제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직선기선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도한 기선을 획정하는 사례가 있다(Roach and Smith 2000, 47-48).

둘째, 무해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이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통항이다.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통항”이란 영해를 통과하거나, 연안국의 내수로 진입할 목적으로 영해를 통과하는 항행을 말하는 것으로, 측면통항과 수직통항이 포함된다(Tanaka 2012, 85)⁹⁾. 또한 동 협약 제19조 2항에서 유해통항에 포함되는 12가지 활동의 예를 나열하고 있다. 유해통항의 예로는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군사훈련이나 연습, 정보수집, 선전행위, 항공기 및 군산기지의 선상 발진·착륙·탑재,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관련 법령에 위반, 오염행위, 어로활동, 조사와 측량활동, 통신체계와 기타 설비·

5)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4항.

6)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5항.

7)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6항.

8)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1항.

9) 유엔해양법협약 제18조. “불가항력, 조난, 구조 등을 위하여 닻을 내리는 경우에는 통항으로 본다.”

시설물에 대한 방해 및 통항과 관련 없는 그 밖의 활동을 들고 있다.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동 협약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무해통항에 대한 정의만 둘 뿐 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Hakapaa and Molenaar 1999, 132).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외국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 여부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문제로, 해양강국들은 과거부터 인정되어 온 국가의 관행이므로 사전통고나 사전허가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D.P,O' Conne 1982, 274-275),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영해에서의 군함의 통항 그 자체가 연안국 안보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쟁점은 군함에 무해통항 관련 유엔해양법상 규정 적용 가능 여부와 연안국의 사전허가나 사전통고 요구 허용여부로 압축된다(이석용 2015, 76-79).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에서는 “연안국은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 법 규칙에 따라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군함의 무해통항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협약의 무해통항에 관한 규정들은 군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허가나 사전통고와 같은 조치는 불필요하다(이석용 2016, 423).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¹⁰⁾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양사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활용방법 또한 다양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원양어업으로 인한 연안국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물자원을 남획으로부터 보호하여 해양에서의 공유물의 비극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등장하였다(Donald R and Stephens 2010, 82)

10)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유엔해양법회의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해양강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해화를 차단하기 위해 연안국의 특별한 권리에 종속되는 공해의 일부로 보지만, 개도국들은 정치적 독립에 상응하는 경제적 자립 달성을 위해 영해적 성격을 지속 주장하였다(이창위 2009, 6)¹¹⁾. 결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특정법적제도에 따르는 영해이원 및 영해와 인접한 수역¹²⁾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은 규정의 해석과 국가실행에 맡겨졌고, 동 수역에서의 구체적 권리와 관할권 귀속에 대한 각국의 대립은 형평과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해결하도록 협약에 규정되었다(이창위 2014, 3).

배타적 경제수역은 다른 국가들에 관한 한 공해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항행이나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¹³⁾ 또한 공해에 대한 해양법협약의 제반규정은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¹⁴⁾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제3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사전동의 없이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김현수 2010, 124-125).

관련하여 연안국들은 영해 · 배타적 경제수역 · 공해의 법체계가 구축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종료 후 자국의 해석선언과 국내법 제정을 통해 동 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야시, 타나카, J.

11) 영해과 내지 영해주의파(territorialist)라고 불리는 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으로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였고, 공해적 성격을 강조한 공해파 내지 우선적 권리파(preferentialist)는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반대하는 선진해양국의 입장으로 연안국은 해양자원이나 환경보호 내지 해양과학조사와 같은 특정분야에서만 우선적 권리나 특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즉 선진해양국들의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들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David Joseph Attard.(1987).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pp.61-62.)

12)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

13)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2항, 제58조 1항.

14)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2항.

M. Van Dyke 등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근거로 제3국의 군사활동은 해양환경 파괴 등 연안국의 권리행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동수 2018, 15).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주권 (sovereignty)이라고 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 (sovereign right)라고 한 것은 이들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인 당해 수역에 대한 경제적 관할권일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이석용 2016, 430).

즉,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적법한 해양의 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안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공해에서의 군사활동은 전통적으로 공해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그대로 승계됨이 마땅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타국에 의한 공해의 합리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해양강대국인 미국의 경우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2017년 미국 국회연구보고서(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O'Rourke 2017, 4)

2.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

가. 중국

먼저, 사회주의 국가들 중 북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대해 분석해 본다. 중국은 동쪽의 발해만과 황해, 동중국해, 남쪽의 남중국해를 면하고 있으며,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은 3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해안선은 18,000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세기 중반까지 대륙중심의 정책을 추구하여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중국 해군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저서들은 ‘연안방어’를 핵심적 논조로 다루었다(Anon 1994).

한편, 중국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1949년 자국의 해양정책과 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한동안 자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계산된 모호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돌연 1958년 9월 4일 「영해에 관한 성명」을 발표

하였다. 이는 1958년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 대한 대응과 타이완 해협 위기 고려 중국의 안보 유지를 위해 대외적 입장 표명의 필요성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양희철 2014, 11).¹⁵⁾

중국은 1958년 9월 4일 발표한 「중국정부의 영해관련 성명」을 통해 발해만의 내수 설정, 직선기선 채택을 선언하였고, 1992년 2월 25일 ‘중국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12해리 영해와 직선기선을 채택하였다(송병진 2014, 33). 그러나 성명 및 법 제정 당시 그 기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1996년 5월 15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발표한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에서 비로소 본토에 대해 49개, 서사군도에 대해 28개 기점을 밝혔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96, 2).

앞서 언급했다시피 중국은 1992년 제정된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에서 기선 설정은 직선기선 방식만을 채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하고 연안에 섬들이 산재하지 않은 수역, 저조시 수면 상에 있어도 고조시 수몰되어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低潮高地)에 대해서도 기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중국 본토와 해남도의 49개 기점을 연결하는 48개의 직선기선 중 25개의 기선이 24해리 이상이며, 24해리-48해리가 9개, 48해리-100해리가 13개, 100해리 이상인 직선기선도 3개에 달하는 등 직선기선 중 일부는 지나치게 길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또한 “중국이 직선기선이 아니라 저조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기선을 설정했어야 한다.”¹⁶⁾고 지적하였다.

15) 당시 중국은 유엔에서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1958년 2월 ~ 4월 / 제네바)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중국은 해양법 주요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타이완 해협 위기 상황에 대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한 적절한 입장 표명 또한 필요했던 시기였다.

16) “Much of China’s coastline does not meet either of the two LOS Convention geographic conditions required for applying straight baselines. And, for the most part, the waters enclosed by the new straight baseline system do not have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and, but rather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eas or territorial sea. In these area it would be appropriate to use the normal baselines, the low-water line.”

요컨대, 중국은 자국의 해양정책, 기선에 쓰이는 기점 등에 대한 공식적 선포를 한동안 의도적으로 유예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주변국들의 항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70년대 유엔가입과 유엔심해저위원회 및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자국의 해양정책을 타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식 성명이나 법률을 제정을 통해 지속 주장해 오고 있다.¹⁷⁾ 또한 중국은 2003년 ‘무주민해도 보호와 이용 관리규정’ 공포,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 해도보호법’ 발표 등을 통하여 특수한 보호가치가 있는 도서, 특히 영해기점에 소재한 무인도서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보호 및 관리해 오고 있다.

두 번째로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중국의 태도를 분석해 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에서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58년 ‘영해에 관한 성명’에서 “일체의 외국비행기와 군용선박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영해와 영해상공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58년 자격 미달로 제네바 협약에 참가할 수 없었던 현실 고려, 성명의 방법으로 중국의 입장을 타국에 인지시키기 위함이었다(양희철 2014, 13).

중국은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회의에서도 선박의 무해통항 중 군함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 협약 채택 이후에는 “무해통항 관련 동 협약 상 규정들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서 군함에게 사전통고나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¹⁸⁾ 이처럼 중국은 1958년 성명에서부터, 1983년 해상교통안전법¹⁹⁾ 및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²⁰⁾ 등에서

17) 유엔해양법협약 제 7조 3항,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7조 4항, “직선기선은 간출지까지 또는 간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18) UNCLOS III Official Record. vol.17.(1984), pp.155, 158, 162.

19)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 외국국적의 군용선박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수 없다.”

외국 군함의 영해통항 관련 정부의 사전허가를 꾸준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중국해에 조성된 인공섬 주변 12해리 내 미국 군함 통과에 대해서 항의하는 등 군함의 무해통항 관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해통항과 관련된 중국의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은 과거 서구 열강의 침략에 따른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석용 2016, 425).

한편,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면서 제6조에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외국의 비군사용 선박은 중국의 영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라고 일반적인 규정을 기술하였을 뿐, 유해통항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하지 않았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대외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계산된 모호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 수역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1975년 개최된 위원회에서 중국 대표는 동 수역이 국가관할권 범위 내 구역에 해당되며 공해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동 수역 내 일체의 자연자원은 모두 연안국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안국은 동 수역 내 자연자원의 보호·관리·이용·조사·개발 및 기타 경제활동을 위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하면서, 연안국 권리행사의 범위는 환경보호 및 조사, 각종 시설의 건설·조정 및 사용, 그리고 해당 수역에서 경제활동의 정상적 진행 보장을 위해 필요한 안전 통제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양희철 2014, 6).

중국은 동 수역의 폭과 관련하여 1973년 ‘국가관할범위 내의 해역에 관한 업무 문서’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지리, 지질조건, 자연자원 상태와 민족경제발전의 필요에 따라 영해 외측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획정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관련하여 1970년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1947년 선포된 남미 국가의

20)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 “외국 군용선박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시에는 반드시 중국 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200해리 권리 주장을 지지한 바 있고(人民日報 1970.11.20.), 1972년 유엔 해저위원회에서도 동 사항에 대한 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상기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 수역을 공해라기보다는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수역 내 일체의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통제 권리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을 넘어 포괄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2년 후인 1998년 6월 26일 동 수역에 관한 법률인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였다. 동 법률에서 역시 200해리 폭을 규정하였고(제2조) 동 수역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활동과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조사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어족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제3조).

상기 법률 규정들 역시 대체로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정책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에서는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은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제3국의 권리를 기술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고, 해저전선과 도관부설의 자유와 해양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에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달리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외국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취해오던 ‘배타적 경제수역이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입장의 고수를 표명한 것과 같다. 관련하여 2001년 중국 전투기가 중국 EEZ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해군 정찰기에 대해 요격을 시도한 사건²¹⁾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은 자국의 자연안보(Natural security)를 위협하는 외국항공기의 상공비행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Donnelly 2004, 25,30).

요컨대,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률에서 동 수역의 거리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앞서 언급했던 기선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송병진 2014, 37).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정된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또한 과도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된 취지 고려 시 연안국의 권리는 동 수역에 대한 경제적 관할권일 뿐인데 반해, 중국은 경제적 관할권을 넘어 안보적인 이유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3국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 수역 내에서 연안국이 갖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가 아닌 ‘주권’으로 해석하여 동 수역을 영해화함으로써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3조에서는 “중국은 접속수역 내와 그 육지영토·내수 혹은 영해 내에서의 안전, 관세, 재정, 위생 혹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해 통제권을 행사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된 4가지의 목적(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외에 ‘안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접속수역에서 실제 각국의 권리행사 양태가

21) 하이난 섬 남동쪽 제70해리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비행하던 미해군 정찰기 EP-3와 이를 요격하던 중국 전투기 F-8이 충돌하여 전투기 조종사는 사망하고, 미해군 정찰기는 하이난 섬에 있는 중국 군부대에 비상착륙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중국은 자국의 경제수역에서 미국이 상공 비행권을 남용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기 4가지에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전까지 약 96개 국가가 접속수역이나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동 수역에서 안전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제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가 31개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접속수역에 대한 권원이 국제법, 즉 해양 법에 있으므로 접속수역 내 외국선박에 대한 경찰권 역시 공해상에서의 권리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안국이 해양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접속수역 내에서 상술한 4가지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통제권이 허용되지 않는다(Jennings 외 1992, 618–619).

나. 러시아

러시아(구소련)는 북극해 기선 설정을 위해 161개 좌표를 설정하고, 사할린 섬, 쿠릴열도 및 코르만도르스키(Commander) 섬들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는 등 기선의 기점이 되는 좌표들을 1985년 공표하였다(이석우 외 2010, 36). 또한 1998년 제정된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률」에서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서 러시아는 영해기선 설정 시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 근처에 섬이 있는 경우 직선기선을 사용도록 하였다. 영해의 폭은 통상기선이나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규정하고, 역사적인 만을 제외하고는 만입의 길이가 24해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러시아는 영해에서 외국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잠수함의 경우 자국 국기 게양 및 부상 항해를 원칙으로 하고, 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선박의 경우 3척 이상이 동시에 영해를 지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짐으로써 여러 나라의 영해를 통과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송병진 2014, 48). 한편, 러시아는 1998년 제정된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률」 제15조에서 항행 금지지역 혹은 위험한 지역으로의 항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행금지 근거로 써는 항행안전, 자국 이익 보호 및 내수와 영해의 환경보호 등을 들고 있다.

러시아는 1988년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범위는 200해리로 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 러시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그 밖에 국제법상 합법적인 이용을 규정하였다.

요컨대,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영해의 기준선이 되는 기점에 대해 명확하게 공표하였다. 또한 영해제도, 무해통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있어 러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대부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병진 2014, 45).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에서는 미국, 일본과 북한, 대서양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흑해에서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터키 그리고 카스피 해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많은 국가들과 해양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관계에서 해양과 관련된 통일되고 공신력 있는 규범 적용의 필요성 때문에 판단된다.

다. 베트남

베트남의 동쪽 해안선은 3천여km로 내륙에 비해 해안선의 비율이 매우 높다. 베트남은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전인 1977년 이미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선포’를 하였다.

베트남은 해양법에 대한 원칙으로서, 첫째, 지역 내 안정과 평화적 환경 조성, 각 수역 내에서 국가 관할권과 국제협력의 확대, 사회·경제적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영해의 법적 제도와 범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기초를 확립하고, 헌법 및 법률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원칙을 유지하며, 셋째, 국가의 안보와 사회·경제적 개발, 특히 새로운 정세 속에서 영해에 대한 관리와 개발에 관한 당과 정부의 노선, 체제 및 주장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각 규정들을 국내법화하고 영해법을 법률적 효력을 강한 기본 법체제로 삼아서 영해에서 관할권, 영유권,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Khanh 2012, 17).

1994년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 및 비준을 통해 해양에서의 관할권 행사, 이해 당사국들의 권리 존중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협력과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2년에는 이전 정부의 선언, 기존 체결된 협약,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기록된 내용의 제도화 및 해양 개발과 EEZ 관리에 관한 법적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영해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영해법 공포는 세계와 지역 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영해법의 제정으로 해양보호관리 분야에 관해 법률 규정에 따른 통일된 원칙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영해법 제2장에서 영해 폭은 12해리로 하며, 영해기선 설정방식은 통상기선 외 필요 시 직선기선도 인정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나 군도의 경우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서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및 EEZ 등을 인정하나 그렇지 않은 돌섬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에 잘 부합한다. 제3장에서는 영해 내 국외 선박들이 베트남 수역을 통과하거나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이익, 항해안전, 천연자원 보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영해 내 금지구역, 임시 금지구역 등에 대한 설정 권한과 영해 내 항로 등을 규정하였다. 제7장에서는 베트남과 각 국가 간 협력과 해양개발 관리에 관한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내용 및 원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하였다(Khanh 2012, 14 – 16).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해양관련 국제사회의 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여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보 및 확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기 국가들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해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서, 해양관할권에 대해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북한은 비교적 긴 해안선을 동·서해에 가지고 있는 연안국이고, 유엔회원국이며, 대외관계에서 국제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수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탈냉전기 국제적 시류와 상반되게 전면적 개방을 거부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처해 왔다. 이로 인해 그들의 공식적인 해양정책이나 해양관련 법제는 대외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학문적 연구결과를 입수하는 것 또한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본 연구 또한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개방을 통한 국제적 협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협력에 대비하여 그들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열람이 가능한 관련 북한 문헌과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북한이 취해온 국가행위 및 국제회의 발언자료, 북한의 해양 관련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논문 및 문헌 등 주로 2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틀

가. 분석범주

본 연구의 분석범주는 관련자료 입수의 한계를 고려하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관할권을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여부로 대분류하여 유엔해양법협약 内, 外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각 해양관할권 별로 소분류한다. 본 연구의 분석범주는 표1과 같다.

<표1> 분석범주

대 분 류	소 분 류		
유엔해양법협약 内 해양관할권	영해제도	기 선	
		폭	
		무해통항	
경제수역			
유엔해양법협약 外 해양관할권	군사경계수역		

나. 분석기준

법률은 결정된 정책의 발현이자, 그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이다. 즉 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은 대개 법률로 구체화되므로, 관련법률이 제정되고 선포됨으로써 그 정책의 집행을 인지하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이 북한으로 수용되어 구체화되는 양상과 이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표명 관련 대외적 공개 양상 분석한다. 즉, 각 분석범주에서 북한이 보이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용성’과 ‘명확성’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1)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수용성

첫 번째 분석기준인 수용성은 북한의 각 범주별 해양관할권에 대한 주장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정합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해양관할권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정합 정도를 -2점(매우 낮음)에서 2점(매우 높음)까지 5점 척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상 없는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 -2점(매우 낮음), 협약 상 있는 제도이나 북한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 -1점(낮음), 협약 상 있는 제도이나 규정되어 있는 권리 외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0점(보통), 보통 수준과 상황은 동일

하나 주장하는 추가적인 권리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권리인 경우 1점(높음), 협약 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규정에 부합하는 주장일 경우 2점(매우 높음)으로 평가한다.

모든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익 극대화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분되게 마련이고, 국가의 역량(국력)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대외정책 결정 시 국내적 환경과 대외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각 요인마다 강대국과 약소국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에 비해 약소국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국제체제나 안보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외부적 요인이라 주로 국제적 사건이나 행위, 외부환경에서 오는 도전, 주변 국가들의 대외정책 등을 말한다. 이는 냉전기 또는 탈냉전기 한·미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비해 국력이 열세인 한국은 냉전 및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 등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특히 냉전기 한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외부환경에 따른 큰 영향 없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김종민 2013, 111-114).

이로 미루어 볼 때, 강대국은 국내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외부환경의 도전을 적응시키는 반면, 약소국은 외부환경에서 오는 요구와 도전을 중심으로 국내환경을 적응시키는 경향이 있다(James N.Rosenau 1981, 25). 다시 말해, 약소국은 국제체제 질서 유지 및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외정책을 현실에 맞게 적응시킨다(Robert O. Keohane 1969, 23). 즉,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약소국은 국제정치환경을 이용, 편승하거나 이에 적응함으로써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외정책 선택 시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군사·안보와 같은 외부 정치적 위험 극소화에 역점을 두어 다소 수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강대국과 약소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영토의 크기, 인구, 경제력, 군사력, 대외경쟁력 등이 구분의 주요 척도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일·중·러 4개국과는 명백한 힘의 차이를

보이는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다.²²⁾

해양관할권에 대해 북한이 보이는 태도가 곧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간주할 때, 다소 약소국으로 분류되는 북한도 여느 약소국들과 유사한 태도를 취한다면, 외부환경 변화에 편승하거나 외부환경 변화를 토대로 국내환경을 적응시키려고 할 것이다. 특히 군사·안보적 측면을 중시하여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2) 북한 입장표명의 명확성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할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한 명확성 정도를 분석해 본다. 명확도는 북한의 각 범주별 해양관할권에 대한 타국의 인지 가능성은 기준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또는 모호하게 관련입장을 표명했는가를 5점 척도로 구분한다. 함구하여 관련입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점(매우 모호), 북한 내부문현, 타국의 분석자료, 북한의 실제 행동을 통해 타국이 관련입장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1점(모호), 보도 및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관련내용을 언급한 경우 0점(보통), 공식적인 국제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북한이 발표한 경우 +1점(명확), 정식규범 발령 등으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경우 +2점(매우 명확)으로 평가한다.

자국 해양관할권에 대한 선언은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이지만,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관할권의 유효성은 국제법 영역, 즉 국가 간 문제에 속한다(ICJ Report 1951, 138-139; 이창위 1995, 165)²³⁾ 앞서 언급했듯 법률은 정책의 발현이자 정책집행의 도구이므로, 북한이 해양관할권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 결정을 했다면, 특히 이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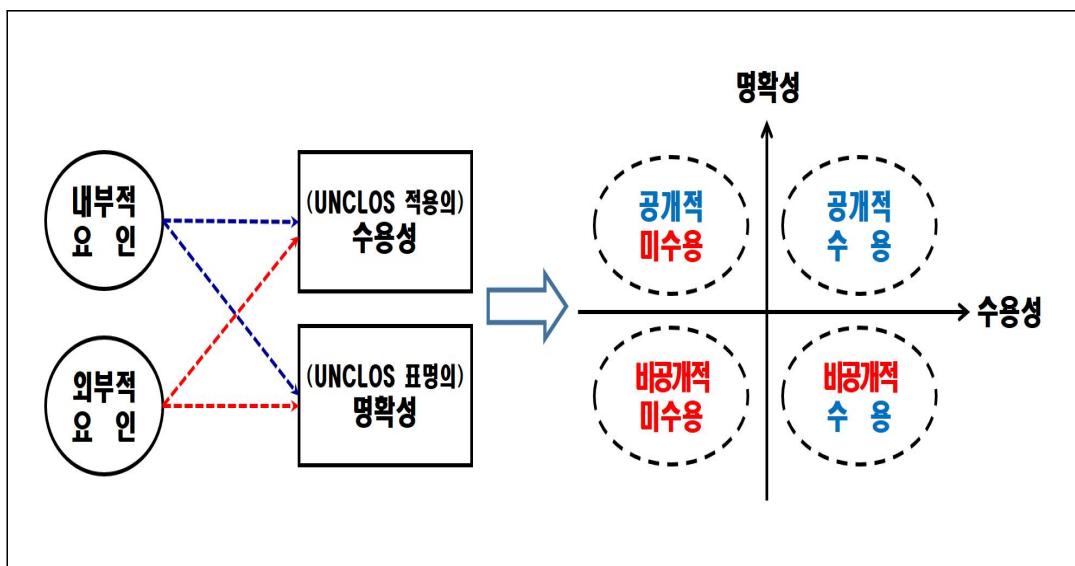
22) 약소국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국토, 자원, 군비 등이 미약한 작은 나라‘(표준국어대사전)

23)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도 역사적 권리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공연성’을 들고 있다.

다. 분석틀

북한의 각 범주별 해양관할권에 대해 부여한 점수를 가로축이 수용성, 세로축이 명확성인 좌표평면에 도식하여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의 수용성과 명확성을 북한 내·외부적 요인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수용성과 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된 결과를 좌표평면에 도식하며, 수용성과 명확성이 모두 높으면 1사분면, 수용성은 낮으나 명확성이 높으면 2사분면, 수용성과 명확성이 모두 낮으면 3사분면, 수용성은 높으나 명확성이 낮으면 4사분면에 도식될 것이다.

<그림1> 분석틀



제 3 장 해양관할권에 대한 북한의 태도

북한은 동·서해에 걸쳐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을 적용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단순한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접국·대향국으로 둘러싸인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외 문제들은 복잡하다. 특히 해양을 경계로 상이한 이데올로기,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장, 남북 분단 등 복잡한 주변환경은 폐쇄적인 북한으로 하여금 해양이 마치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듯 정치적, 안보적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박춘호 1984, 103).

1960년대까지 해양 관련 공식적인 선언이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해양정책이나 관련법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선박 나포, 방송 등으로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 2차 제네바 해양법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던 북한이 1970년대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회의에 참가를 시작으로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법률 및 대외선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북한은 영해문제에 대해 중국 및 일부국가들이 주장하는 200해리 복수영해 제도를 지지하고, 직선기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해역이 내수가 되는 경우 그 수역에 대한 무해통항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 군용선박의 영해 통과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지지하고,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퇴거 불용 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외국 군함의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타국의 영해 내 혹은 인접수역에 있는 외국도서는 독자적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 1 절 영해제도

북한은 영해에 대해 “넓은 영해, 좁은 공해”를 주장하는 제3국의 입장 을 지지하며, 항행이나 어업에서 우세한 지위를 갖는 해양선진국들의 자유로운 해양 이용을 반대했고, 특히 영해의 안보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여러 회기에서 북한 대표단이 한 연설이나 발언, 북한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⁴⁾

북한의 한 문헌은 영해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김영철 외 1988, 95-96).

령해는 영토와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실현되는 일정한 바다이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해면과 수중 및 그의 지하에도 미친다. 연안국의 주권행사는 1982년 12월 체결된 해양법협약에 규정되었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된 것은 영해가 연안국의 국방과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를 보위하려는 연안국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법적 규범으로 확고하게 되었다.

위 서술로 보아 북한은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을 들어 영해에서 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인용함으로써 그 법적지위가 국제적으로 확고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같은 문헌에서 이러한 영해에 대한 주권의 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령해는 연안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물고기 총량의 근 80%는 연안수역에 살고 있으며 륙지와 잇닿아 있는 바다 밑에는 막대한 양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부원은 륙지와 린접한 바다에 있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하여 가장 철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해의 부원에 대해서 연안국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까닭은 영해가 연안국의 육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된 이론으로 Ian Brownlie는 “영해란 연안국에 인접한 일정범위의 바다이므로 영토에 부속적인 것이며, 영토 없이 영해만을 갖는다거나 영해만을 분리하여 쳐분할 수 없다”는 종률이

24) 1974년 6월 카라카스에서 열렸던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회의에서 북한은 각 국가가 자국의 지리적 조건, 경제적 현실, 국방상의 안전 그리고 이웃 연안국들의 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에 의해 그 영해 및 국가 관할권 하에 있는 한계를 독자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론을 주장하였다. 상설중재재판소는 1909년 노르웨이와 스웨덴 사이의 Grisbadarna Case에서 육지의 할양에 영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영해를 영토의 ‘불가분 종물’로 보았다.²⁵⁾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도 1951년 영국·노르웨이 간 어업사건에서 ‘영해의 본질에 내재하는 밀접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육지영역에 대한 영해의 밀접한 의존성(some reference must be made to the close dependence of the territorial sea upon the land domain)’을 강조했다.²⁶⁾

상기 이론과 상설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견과 같이 영해를 영토의 불가분적인 부속물 또는 종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창위 2011, 7-8).

요컨대, 북한은 영해의 법적지위와 연안국의 주권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과 국제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고, 영해가 영토의 불가분 종물로서 연안국의 국방과 경제적 이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영해에 대한 기본입장을 기반으로 영해 폭, 영해 기선,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북한의 태도를 살펴본다.

1. 영해폭

영해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해리설, 60해리설, 목축가능거리설, 1일 항해거리설 등이 있었다 (이병조 외 2008, 423). 18세기 초 네덜란드의 바이커스후크(Bynkershoek)가 “국가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미치는 곳에서 그친다(a state's domination extended only so far out to sea as its cannot would reach)”는 착탄거리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이탈리아의 갈리아니(Galiani)는 영해의 폭이 포대 위치와 대포의 사정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당시 포탄 최대 사거리가 3해리임을 고려하여 18세기 후반부터 영해 3해리설이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성관실 2015, 15). 19세기 후

25) Digest of International Cases on the Law of the Sea.(2007), pp.38-41.

26) Fisherues Case–United Kingdom v. Norway–, Judgment of December 18th, 1951, ICJ, Reports of Judgements, p.133.

반 미국 남북전쟁 당시 기술의 진보로 대포의 사정거리를 넘게 되고, 어선의 기선화 및 트롤어선의 보급에 따라 연안 어장의 황폐화 문제 등 영해 확장의 필요성이 지속 논의되다가 유엔해양법회의를 거듭한 결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정하였다.²⁷⁾

북한은 현재까지 영해의 폭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 및 북한의 관련 문헌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12해리 영해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엔군 측의 3해리 영해 주장에 대해 북한은 12해리 영해를 주장한 사실이 있다. 이는 북한이 영해 폭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이나 법률이나 선언과 같은 형식이 아닌, 정전협정 교섭과정에서의 일방적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이창위 2011, 8).

구소련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55년 내각 결의²⁸⁾ 제25호에 의해 12해리 영해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결의내용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자료 또한 부정확한 점이 있어 이것 또한 북한의 영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이창위 2011, 9)

1958년 4월 17일 북한과 소련 간 체결된 ‘국경획정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조약’에서 ‘이 조약은 두만강의 북한-중국-소련 3개국 국경에서 하구까지 16.93km와 하구에서 동해로 뻗은 북한-소련 양국 12해리 영해 외측한계까지의 22.2km, 도합 39.13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경계획정을 위한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보면 북한은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박춘호 1988, 170).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시 소련 대표단이 12해리 영해를 채택하면서 ‘소련의 12해리 영해 채택은 이미 반세기 전에 정해진 것이다.’라고

27)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및 영해법에 따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영해로 정하는 원칙을 선포하였으며, 다만 대한해협의 영해는 3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28) 북한 성문법 체계 :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최고인민회의 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내각의 결정·지시/내각위원회와 내각성의 지시>지방인민위원회 결정>지방인민위원회 결정·지시

한 점을 고려 해 볼 때²⁹⁾ 소련의 영향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도 12해리 영해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12해리 영해를 취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동해와 서해에서 발생한 1968년 푸에블로호(Pueblo) 사건과 1975년 쇼세이마루(松生丸) 사건을 통해서였다.

먼저,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동경 $127^{\circ}54'3'$, 북위 $39^{\circ}25'$)에서 항해 중이던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P-4 초계정 4척과 MIG기 2대를 동원하여 나포한 사건이다. 푸에블로호에는 함장 로이드 부커(Lloyd M. Bucher)를 비롯한 미 해군 장교 6명, 병사 75명, 민간인 2명, 총 8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나포 과정에서 미국 병사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전원 체포되어 억류되었다. 동사건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딘 러스크의 아래 발언을 통해 북한이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³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의 선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다른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는 1953년의 정전협정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12해리의 영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억류된 지 11개월 후인 1968년 12월 23일 미 육군 소장 길버트 우드워드가 미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 영해 침입 및 첨보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함하고, 승무원 82명과 유해 한 구를 송환 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³¹⁾

북한 정부 귀하, 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 23일 북한 영해 내에서 인민군 해군합정이 자위조치에 의해 나포된 선박이 북한 영해 내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는 의미의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자백 및 북한 정부 대표가 제시한 증거물의 타당성을 인정함. 전면적인

29)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1958), VolIII, p31.

30)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2, 1968, p.756.

31) Official Documents, Release of Crew of USS Pueblo,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al Law, Vol.64, 1969, pp.684-685.

책임을 지며 또한 북한에 대해 미국 선박이 범한 중대한 간첩행위에 대해 엄숙히 사과한다. 그리고 미국 선박은 앞으로 북한의 영해 내에 다시는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을 한다....본 문서의 서명과 동시에 82명의 푸에블로호 전 승무원과 시체 1구에 대한 인수한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 육군장성 길버트 H. 우드 워드.

이 나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나포 당시 푸에블로호의 위치가 북한의 영해 내인가 영해 밖 공해상인가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나포 당시 푸에블로호가 그들의 12마일 영해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공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후술하는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기선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박춘호 1984, 88). 여기서는 영해 폭 관점에서만 논하자면, 미국은 당시 해양에서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3해리 영해를 고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12해리 영해 침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했을 것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는 승무원들의 석방 교섭 타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의 12해리 영해 침범을 인정하게 되었다(William E 1969, 13).

한편,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1971년 북한에서 출판된 「법학사전」에서는 영해를 ‘해안을 련접하고 있는 바다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실현되는 수역’이라고 정의하며 영해 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령해의 너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한다. 매개나라는 자기 나라가 처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지리적 조건과 경제국방상 리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너비의 수역을 자기의 영해로 선포할 수 있다....오늘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 실정과 국제법상 공인된 방법에 따라서 3-12해리 혹은 그 이상의 영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령해의 너비는 일률적으로 3해리로 되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신생독립국가들이 그 이상 영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연안국의 영해를 좁힘으로써 그 나라의 수산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랙탈하며 나아가서 연안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을 침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화국은 우리나라 영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으며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간절히 수호하고 있다.

또한 1974년 6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한 북한 수석대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인민들은, 침략과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간섭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환으로서, 자국의 영해와 천연자원을 지키기 위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제3세계의 인민들은 자국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영해 및 다른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영해를 3해리로 한정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노력을 분쇄해 왔다....북한은 각 국가가 자국의 지리적 조건, 경제적 현실, 국방상의 안전 그리고 이웃 연안국들의 이익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에 의해 그 영해 및 국가관할권 하에 있는 한계를 독자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앞서 서술한 북한의 「법학사전」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한 북한의 수석대표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보다 적극적인 북한의 영해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영해 폭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기 보다는 자국의 지리적, 경제적, 국방상 사정에 맞게 영해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특히, 1, 2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하여 3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넓은 영해, 좁은 공해’를 주장하던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로소 이 시기부터 북한은 국제 해양 관계에서 국제무대에 나타나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보여진다 (송병진 2014, 61).

그 후 북한의 12해리 영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하는데 이는 쇼세이마루(松生丸)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5년 압록강 하구에 있는 신도 근처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일본의 어선 쇼세이마루가 북한 경비정의 총격으로 9명의 승무원 중 2명이 사망하고 선체는 나포된 사건이다. 일본은 동선박이 북위 $39^{\circ}10'$, 동경 $123^{\circ}55'$ 공해상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를 내고, 동선박을 나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북한은 영해를 침범한 정체불명의 선박이 있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고 도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억류되었던 선체와 승무원의 석방, 북한

의 행위에 대한 일본측에 사죄 및 사망한 승무원의 가족에게 각각 2만 달러씩을 배상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동사건 후 일본 수산청은 어업단체 및 도(都) · 도(道) · 부(府) · 현(懸)에 조업 시 북한 영해는 12해리라고 생각해서 그 이상 접근하지 말고 정확한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라는 통지를 발송하였다(김찬규 외 2009, 227-228). 이 사건의 쟁점 또한 쇼세이마루의 북한의 12해리 영해 침범 여부인데, 이는 다툼 없이 인정되었고, 북한의 대응 정도가 문제가 되었을 뿐이다. 즉, 이 사건으로 일본은 북한의 12해리 영해 침범을 인지하게 되었다(이창위 2011, 10). 이로 보아 북한은 영해 침범에 대해 과도하리만큼 적극적으로 반응했음을 볼 수 있다.

1998년 북한에서 발행된 국제법 관련 문헌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해 폭 관련 규정 정립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이 미제국주의를 대상으로 완강히 투쟁하여 얻은 산물이 이라고 여기고 있다(김영철 외 1988, 96-97).

령해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문제로 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은 영해의 너비를 3마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였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은 영해의 너비를 3마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정해야 한다고 강렬히 주장하였다...령해의 너비를 3마일로 하여야 한다는 제국주의자들의 고집의 근거는 이것이 ‘전통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3마일 영해설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3마일 영해설은 18세기 포탄의 착탄거리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다. 오늘날 포탄의 착탄거리가 18세기보다 훨씬 늘어난 조건에서 3마일로써 연안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982년 12월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8년 동안 영해의 너비문제는 심각한 논쟁문제로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연안국이 12마일까지 영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또한 2002년에 출판된 북한의 국제법 사전에서 “우리 공화국은 12마일 영해를 정식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실무적으로 12마일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기 일련의 사건, 북한 내부 문헌, 타국에 의한 분석 등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공식적인 선포는 없었지만, 꽤 오래전부터 실질적으

로 12해리 영해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02, 181).

2. 영해기선(領海基線, baseline)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모든 해양수역의 경계선이 출발하는 기준선이다. 즉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부의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측정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해양 이해관계, 특히 해양수역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김현수 2010, 30-31).

북한은 영해에 대해 ‘연안국의 해안을 따라 연안국가의 주권이 전적으로 행사되는 일정한 너비의 바다’³²⁾, ‘해안을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진 해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전적으로 행사되는 바다’³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정한 너비’란 자국의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의미하고, 이를 측정하는 기준선이 바로 영해기선인 것이다.

1971년 발행된 북한 「법학사전」에는 기선설정 방법이 통상기선, 직선기선 그리고 ‘항구수역이나 만수역의 경계선’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찬규 외 2009, 198).

령해의 너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1. 소여 국가연안의 최저간조선으로부터 계산하는 방법 2. 만수역, 항구수역 등 국내수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계를 연결하는 선을 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굴곡이 심하고 바위와 섬들이 널려져 있는 해안에서는 바다 쪽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돌출부 혹은 섬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직선기선)

1988년 출판된 북한의 한 국제법 전문서적에도 북한의 기선설정 방법은 이전과 변함없이 3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며, 기선종류에 따른 설정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김영철 외 1988, 197-198).

기산선은 영해와 국내수역을 가르는 출발선으로 된다. 그러므로 기산선을 어떻게 선정

3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92). 국제법학, p.102.

33)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2002). 국제법사전, p.181.

하는가에 따라 영해의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일반 기산선은 해안선의 나蠹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단조로우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영해를 정할 때 적용된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클 때에는 최저썰물선(저조선)을 기산선으로 정한다. 최저썰물선을 기산선으로 하는 것은 이 선이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가장 공고하고 안전한 해안선으로 되기 때문이다. 일반 기산선은 오늘 매개 나라에서 영해의 너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직선 기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의 가까운 수역 안에 섬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바다 쪽으로 제일 멀리 나간 섬들과 륙지의 돌출부들을 연결하는 직선이다. 직선 기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떨어져 길지 말아야 하며 이 선의 안쪽에 있는 수역은 국내수역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륙지영역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등대나 항구적으로 바다의 수평면 위에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썰물 때에만 섬처럼 나타나는 륙지들 사이에 직선 기산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일반 기산선과 직선 기산선 이외에 항구수역과 만수역에 직접 잇달아 영해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구수역이나 만수역의 경계선 자체를 기산선으로 하여 영해의 너비를 설정할 수 있다. 오늘 바다를 가진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해안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경제국방상 이익,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반 기산선과 직선 기산선, 만과 항구 수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영해의 폭을 설정하고 있다

위 문헌에서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설정조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서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상 영해기선은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선기선이나 만구폐쇄선을 인정한다. 반면, 북한은 어떤 종류의 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술은 없고, 자국의 지리적, 경제 및 국방상 이익,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영해기선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석우 외 2010, 10).

북한의 영해기선은 그들의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다. 즉, 1977년 6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라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며”라고 하였고, 같은 해 8월 이어서 발표된 ‘군사경계선 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표는 “군사경계선을 동해에서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50해리까지, 서해는 경제수역의 경계선까지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때 북한이 채택한 영

해기선의 종류나 정확한 좌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77년 8월 25일 북한-일본 간 민간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평양에 방문했던 일본 자민당 의원 하야시 요로시는 북한의 경제수역과 군사경계 수역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해기선은 ‘만구폐쇄선’³⁴⁾이라고 말했다(김정건 1968, 329). 이 선은 길이 약 300해리이며, 이에 따르면 무수단 북측의 경성만과 남측의 동한만은 모두 북한의 내수가 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북한 방문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측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고, 북한 기선에 대한 정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김찬규 외 2009, 200) 이 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기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북한의 영해기선이 직선기선이라고 가정해 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상기선과 달리 직선기선을 적용하려면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판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및 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국제법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동해에 그어진 기선은 이러한 국제법상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 직선기선이 아니다.

일단, 북한의 경성만과 동한만 일대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의 가까운 수역 안에 섬들이 산재해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동 기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있으며, 기선 내측 수역이 내수에 포함될 정도로 육지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그어진 기선 상에 등대 또는 이와 유사한 항구적인 설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기선으로 인해 내수에 포함되어 버린 경성만과 동한만에 장기간 관행에 의해 명확히 증명된 특수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이창위 2011, 14).

직선기선이 아니라면 북한이 동해에 설정한 기선은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인 ‘만구폐쇄선’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설정한 만구폐쇄선이 유엔해양법협약 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에는 만(Bays)에 관한 내

34) 한·소 국경에 있는 나주리와 강원도 간성 북쪽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1958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상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설정한 경성만과 동한만의 경우 지명이 만이긴 하나 완만한 굴곡일 뿐 뚜렷한 만입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길이가 24해리 이하도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다른 요건은 다 갖추어졌으되 입구의 길이가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해리의 직선기선은 그 길이의 선으로서 가능한 최대한도의 수역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만 내에 그어져야 한다. 즉, 만구의 길이가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구폐쇄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기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성만과 동한만의 경우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해역에는 통상기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제10도 5항에서는 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이 ‘역사적인 만’으로서 인정되면 만구폐쇄선이 인정된다. ‘역사적인 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과 타국의 존중 및 오랜 관행에 의한 유지가 필요하다.³⁵⁾ 노르웨이-영국 어업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원의 성립요건으로 장기점유, 공연성 및 외국의 일반적 묵인을 들었고(ICK report 1951, 138 - 139),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역사적 만 성립요건으로 해당수역을 외국의 묵인 하에 계속적으로 지배해 왔어야 함을 들고 있다(US v. State of Alaska case 1975, 1017).

2004년 북한에서 발행된 한 문헌에 의하면 북한은 동서해 모두에서 ‘역사적 만에 의한 만구폐쇄선’을 주장하고 있다(최금숙 2004, 70)

만수역제도에서 기본은 공화국의 역사만에 대하여 규제한 것이다.... 만수역이 국내수역으로 되자면 일반적으로 만의 자연입구의 너비가 24n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24n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역사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역사만은 경제적 리익과 국방상 중요성으로부터 오랜 역사적 기간 한 나라의 국내수역으로 인정되어 온 만이다. 역사만은 연안국의 선포와 다른 나라들의 묵시적인 인정을 통하여 공인되게 된다. 공화국의 역사만에 대한 규제에서는 동조선만을 역사만으로 규제한 것이다.

35) ICJ report.(1982).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ement, p73.
(김찬규 · 이규창.(2009). 북한 국제법연구. 한국학술정보(주), p203. 재인용)

...동조선만을 역사만으로 규제한 것은 첫째로, 동조선만이 바다 밑 지형이 비교적 복잡하고 난류와 한류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수역으로서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자원이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주요 어장이며 이름 있는 대소항들이 있어 외국 상선들이 쉬임 없이 드나드는 국제해상 무역지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동조선만이 국방상 매우 중요한 수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선만은 과거에는 일본 침략자들이 짓부셔버리는 중요한 방위수역으로 되어왔으며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는 미제의 해적들로부터 나라를 보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방위수역으로 되어 왔다. 이처럼 동조선만은 경제적으로나 국방적 견지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수역이다.

공화국의 역사만에 대한 규제에서는 이와 함께 서조선만을 역사만으로 규제한 것이다. 서조선만은 평안북도 신도군의 비단섬 마안각과 황해남도 통연군 장산곶사이를 연결한 직선기سان선 안쪽 수역이다. 서조선만을 역사만으로 규제한 것은 첫째로, 서조선만 일대가 해안의 굴곡이 심하고 크고 작은 섬들이 많으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자연지리적 견승로 하여 중세소업과 양식사업을 많이 하며 간석지 간과 소금생산이 많이 진행되는 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곳이기 때문이다...둘째로, 서조선만이 혁명의 수도 평양과 서해안 지대의 주요공업지구를 보위하는 데서 중요한 수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조선만과 서조선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만으로서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일본, 중국, 로씨야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는 국내 수역이다.

위의 문헌에 따르면 북한이 ‘만’이라고 인정하는 요건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만’의 요건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역사적 만을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국제 판례들에서 역사적 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공연성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역사적 만을 주장하는 근거가 연안의 풍부한 자원 및 무역항으로서의 역할 등 경제적 이유와 과거 일본 및 미국의 침략 시 중요한 방위수역이었다는 등 국방상의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 및 미국은 북한과 경제 및 국방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을 고려 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는 것 자체도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공연성을 인정하더라도 타국의 일반적 묵인요건은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무해통항

영해에서의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역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1971년 발간된 북한의 법학사전에는 “일체의 외국선박들은 영해에 수립된 해당 국가의 법질서와 그 나라의 안전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서 사전허가를 받고 그 나라 영해를 항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연구원 1971, 182). 여기서 ‘일체의 선박’에는 군함 및 일반선박도 포함되며, 군함은 물론 일반선박에 대해서도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1977년 6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라는 표제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고, 같은 해 8월 ‘군사경계선 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영해 외측에 군사경계수역을 설정했음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의 영해 외측에 군사경계수역이 있고, 다시 그 이원에 경제수역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군사경계선 설정 관련보도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군사경계선구역 안(수상, 수중, 공중)에서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용선박, 민용비행기(어로선박 제외)들은 해당한 사전합의 혹은 승인 밑에서만 군사경계선구역을 항행 및 비행할 수 있다. 군사경계구역 안(수상, 수중, 공중)에서 민용선박, 민용비행기들이 군사목적을 가진 행동과 경제적 리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971년 법학사전 상 ‘일체의 외국선박’이라는 표현한 것과 달리 상기 문현에서는 외국선박을 군용선박과 민용선박을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민용선박은 사전합의 혹은 승인이 있을 시 군사경계수역 내 항행이 가능하나, 군용선박, 또는 민용선박이라 할지라도 군사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해 이원에 훨씬 더 넓은 수역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무해통항을 인정하는데, 이 수역보다 내측에 있는 영해에서 제한없는 무해통항이 인정될 리는 없을 것이다(김찬규 외 2009, 208).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1988년에 발간된 북한의 또 다른 문현을 살펴보자(김영철 외 1988, 98).

령해는 연안국의 영역의 일부로서 물론 신성불가침이다. 때문에 공해에서 적용되는 자유항행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다가 국제무역화물 수송을 위한 항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안국은 영해에 수립된 국제법적 제도에 따라 외국 배들의 통과를 허용한다. 공인된 영해제도에 의하면 연안국은 자기 영해에서 외국배의 무해항행을 허용한다.(제네바해양법협약 제3장 참조). 무해항행권은 연안국의 안전과 경제적 리익을 침해함이 없이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외국배의 권리이다. 외국배의 무해항행은 연안국의 국내수역에 들어감이 없이 영해를 통과하거나 국내수역 밖에 있는 가박지 또는 항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내수역과 국내수역에 있는 정박지 또는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령해에서 외국배의 통행은 지속적이며 신속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영해에서 외국배는 리유 없이 설 수 없다. 그러나 외국배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재난에 의하여 방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바다에서 재난에 처한 사람, 선박, 비행기에 방조를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선 또는 닻을 내릴 수 있다.

외국배는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규정된 속도를 보장하고 지정된 항로로만 다녀야 한다. 외국배의 항행은 연안국의 질서와 안전을 해롭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배가 연안국의 자주권, 영토완정과 정치적 독립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연안국의 국방과 안전을 해치는 정보수집과 선전행위, 임의의 항공기의 리착륙과 거기에 사람이 오르내리는 행위, 연안국의 세관, 재정, 위생 규정에 위반되는 상품, 화폐 사람을 싣고부리는 행위, 영해에서 물고기잡이를 하거나 영해를 오염시키는 행위, 영해에서 연구조사활동을 하거나 연안국의 통신체계를 혼란시키는 행위, 항행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임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해항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무해항행권은 일반무역선에만 해당되며 군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안국은 외국배의 ‘무해항행권’을 인정할 의무를 지니지만 다른 편으로는 영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법질서를 주동적으로 세울 수 있다.

1971년 법학사전과 달리 이 문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해통항의 의미, 성격, 인정되는 조건, 유해통항의 예 등을 설명하면서 공인된 제도로서 ‘제네바해양법협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북한이 국제규범과 같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어진 기술에서 군함을 제외한 외국선박의 영해 통항에 대해 1971년 법학사전에서와 같이 연안국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군사경계수역에서와 같이 군함의 무해통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1년 법학사전 상 무해통항 개념 대비 관련된 국제규범을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법 적용 대상을 ‘일체의 외국선박’에서 ‘일

반무역선과 '군함'으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규범과의 정합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2년 발간된 「국제법학」에 나타난 북한의 무해통항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108 - 109).

무해항행권은 무역을 목적으로 개항된 무역항으로 드나드는 경우와 국제수로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수역에 해당 국가의 영해가 설정된 경우, 조난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의 영해로 들어가거나 정박하게 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우리 공화국의 영해를 통과하여 무역항으로 드나드는 외국선박들은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무전기를 봉인하고 낮에만 통과하여야 하며, 어선들인 경우에는 어구들을 배 안에 넣고 항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화국이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며, 무역항으로 드나드는데 제공된 봉사료를 물어야 한다.

연료, 음료수, 식량 등의 보충을 위하여 무역항으로 드나드는 외국선박은 공화국의 해당한 기관의 허가 밑에서만 공화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

군함은 연안국의 특별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의 영해를 항행할 수 없다. 군함에 대해서는 무해항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함은 그 군사장비 자체로서 연안국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기 때문이다.

국가들 사이의 합의 또는 연안국의 특별한 허가 밑에서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도 연안국의 해군과 해안경비사령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1988년 문헌과 비교 시 민용선박의 경우 무해통항에 있어 사전승인 요건은 삭제되고, 대신 북한이 요구하는 제반규칙 준수 조건 하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군함의 경우 연안국의 특별허가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2002년 북한에서 발간된 「국제법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령해에서 외국의 일체 상선들은 연안국의 법과 규정을 지키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령해를 통과할 권리를 가진다. 연안국의 법질서를 위반한 외국상선들은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며 나포, 몰수된다. 령해에서 외국의 군함은 연안국의 특별허가 밑에서만 항행할 수 있으며 연안국의 특별허가 없이 령해를 침범한 군함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자위권이 행사된다.

북한은 1992년 「국제법학」에서와 같이 무해통항 인정에 있어 연안국의 안보적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연안국의 법과 규정을 지키고, 연안국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해통항을 할 수 있으며, 군함은 특별허가가 있어야 타국의 영해 항해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의 안전 침해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연안국의 법질서 위반을 주권 침해로 상정하여 외국상선을 나포·몰수 및 영해를 침범한 군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위권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 기준을 일탈하는 과도한 규제이다(이창우 2011, 15).

제 2 절 경제수역

북한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사회주의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에 의해 성취된 산물’이라고 언급하며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김영철 외 1988, 101). 이에 대한 내용은 김일성과 파나마 및 아르헨티나 기자대표단 간 담화에서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병진 2014, 113-114).

빠나마 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진보적인 조치입니다. ... 빠나마 공화국 정부가 200마일 해양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입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빠나마 공화국 정부가 취한 모든 혁명적인 조치들과 빠나마 인민의 용감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³⁶⁾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제3세계 나라들이 200마일 해양권을 위한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 낡은 질서를 깨여버리기 위한 제3세계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제3세계 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렬강들이 일반적으로 국제문제들을 저들에게만 리롭게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버리고 ... 제3세계 인민들과 평화애호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36) 「빠나마 기자대표단과 한 담화-빠나마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김일성저작집 제29권(1974.1 ~ 1974.12). 조선로동당 출판사.(1985).

그 외에도 김일성은 1974년 6월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및 폐루 신문 주필과의 대담, 코스타리카 대사와의 회견 등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김찬규 외 2009, 230).

한편, 북한은 1974년 6월 27일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 시 북한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개발도상국 77그룹의 의견을 지지하였다(이창위 2011, 23).

본 회의는...개발도상국가의 인민들은 침략과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간섭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그들의 영해 및 천연자원을 수호하기 위해 열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해양법 분야에서 제3세계의 인민들은 그들의 영해 및 그 관할권 하에 있는 수역의 범위를 자신들 나라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해를 불과 3해리에 국한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 제3세계 나라들에 의해 올바르게 제기된 200해리 한계의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³⁷⁾

북한은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은 취지로 이미 1977년 6월 21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함을 1977년 7월 1일 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선포하였다(박영수 외 1985, 3).

우리나라 바다자원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밑천의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바다에서 민족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우리나라의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적극 개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마일이며 200마일 경제수역을 그을 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 반분선까지이다.

37) Official Records o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1975). Vol.II, p.215.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수중, 해저, 지하) 안에서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들과 외국선박, 외국항공기 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 안에서 고기잡이, 시설물설치, 촬영, 조사, 측정, 탐사, 개발과 그 밖의 경제활동에 장애로 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 안에서 바닷물과 대기의 오염을 비롯하여 인명과 자원에 해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금지한다.

...8. 이 정령은 1977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대해 7월 15일 우리 외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는데³⁸⁾ 주요내용은 북한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방 선언함에 따라 주변수역에서의 기존 조업질서 교란에 따라 새로운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상기와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역 관련 정령의 법적 효력 발생과 함께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민족의 이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동해에서는 영해의 기준선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경계선을 군사경계선으로 한다’는 이른 바,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하였다. 동 수역 내 수상, 수중, 공중에서는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용선박, 민용비행기들은 해당한 사전합의 혹은 승인 하에서만 동 구역을 항행 및 비행할 수 있다. 군사경계구역과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후술한다. 또한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경제수역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117). 북한 정무원결정 제106호인 이 규정은 1978년 8월 12일 공포되고, 198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개발, 외국인의 활동범위 등 북한 관할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8) 동아일보. 1977. 7.16.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을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양자원을 확고하게 보존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수역 내의 수중, 해저 및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에 대하여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제2조)

이 규정은 경제수역 내에서 경제활동 및 과학조사를 행하는 모든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에 적용된다.(제3조)

이 규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수역 내에서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문제는 다른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제4조)

외국인, 외국선박은 북한의 자원감독기관의 허가 없이는 경제수역 내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없으며, 허가를 얻어서 어로활동을 하는 외국인, 외국 선박은 이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제5조, 제8조)

경제수역 내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은 어로허가증 및 국제해사법이 정하는 선박의 상비문서를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지원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11조, 제12조)

기타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구, 어법, 어획수량, 대상어종에 대한 규정 및 그와 관련된 북한의 관할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상기 북한의 선언들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를 경제수역으로 설정하고, 수중, 해저 및 그 지하를 포함하는 동 수역 내의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자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는 경제수역 내에서 일련의 행위가 금지되며, 북한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거나 인명과 자원에 유해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김현수 2010, 63).

북한은 그들이 선포한 경제수역 내에서 주권을 의미하는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나 인명과 자원에 해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금지한다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두어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창위 2011, 25).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수역 내에서는 외국선박의 자유항행조차도 완벽히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수역 선포 당시 그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관련 선언문 어디에도 영해기선이나 경제수역 외한에 관한

명확한 좌표에 대한 언급은 없다(김찬규 외 2009, 235).

독특한 점은 경제수역 내에 군사경계수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및 중국과 접하고 있는 서해에서는 군사경계수역의 외측한계를 경제수역의 외측한계와 같게 하여 군사경계수역이 곧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게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군사경계수역은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동 수역 내에서 군사적 목적을 가지거나 북한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선박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 내에서의 포괄적 제한규정에 의하면 서해에서 북한은 영해 내지는 내수에 벼금가는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동해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중 동 수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이창위 2011, 23; 김현수 2010, 65).

북한은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난 후 실력을 행사하여 동 수역을 침범한 일본 어선을 몇 차례 나포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 오징어잡이 어선(第5北陽丸)은 1977년 8월 5일 연해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북한의 200해리 수역 인근 북위 40도, 동경 132도 부근을 지나던 중 북한 해군함정이 따라와 퇴거를 명하였다. 당시 따라온 해군함정은 포 덮개를 벗기고 사격준비를 태세를 완비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 경비정은 8월 11일 밤 귀항차 동 해역을 지나던 일본 오징어잡이 어선을 대상으로 임검(臨檢)을 실시했고, 또 다시 동 수역을 침범하면 나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1977년 11월 10일 일본 어선(第57千島丸)은 홍남 동쪽 310km 해상에서 북한의 경제수역에 대한 불법침범을 이유로 동 수역 선포 이후 처음으로 나포되었다. 또한 동년 동월 19일 일본 어선(호혜이 마루)은 무수단 동남쪽 군사경계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역시 나포되었다.

한편, 북한은 경제수역을 1977년 정령으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미 1966년 이래 일본 어선에 대해 70해리 어업수역을 적용해 왔다고 한다. 이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하여 1968년 2월 미 국무장관에 의해 발표된 아래 글에 드러나 있다.

The U.S. Embassy in Tokyo has reported several fishing boat incidents in which North Korean authorities appeared to claim a 70 mile jurisdiction--apparently for fishing purposes only. In May of 1966 and again in May of 1967 North Korean forced seized Japanese fishing vessels located approximately twenty-nine and fifty-eight miles from the North Korea coast respectively. The fishing captains were told that North Korea claimed a seventy mile jurisdiction, and in the second case the captain was detained admitting "I invaded fishing grounds of North Korea."³⁹⁾

상기 발언에 따르면 북한이 이미 어업수역을 시행하고 있었고, 관련하여 외부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가 1977년에야 비로소 200해리 경제수역을 공표하였다. 이는 1977년 이전까지는 공표하는 데서 얻는 이익보다 그렇지 않고 실천만 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김찬규 외 2009, 216).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안국이 경제수역 선포를 통해 200해리까지 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게 되자 북한은 경제수역에 대한 선택을 변경하여 외부로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송병진 2014, 111). 또한 경제수역 선포에 대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국제법 전문서적들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자주권 행사이고, 주변국가들이 먼저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마일 해양권 문제는 국제회의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때에는 많은 큰 나라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결정이 채택되기도 전에 먼저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200마일 어로수역을 선포하였고 뒤이어 쏘련이 선포하였으며 일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자주적 원칙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200마일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한 데 불과한 것이며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입니다."⁴⁰⁾

39)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in 62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68), p.756.

40)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200마일 해양권 문제」, 김일성저작집 제32권(1977.1 - 1977.12). 조선로동당출판사(1986)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적 권리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마일 경제수역을 설정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쏘련, 일본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200마일 경제수역 또는 어업수역을 먼저 선포한 조건에서 부득이하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었다(김영철 외 1988. 105 - 106).

공화국에서의 경제수역의 선포는 주권국가로서의 마땅한 자주권 행사이며 나라의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개발리용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조치이다. 또한 주변 나라들이 200마일 경제수역을 정한 것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한 정당한 조치이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116).

제 3 절 군사경계수역

북한은 1977년 8월 1일 경제수역 시행과 함께 이른 바 해상군사경계선을 선포 및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경계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감안하여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군사경계설정에 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라는 제목으로 평양중앙방송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박영수 외 1985, 4).

군사경계선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1977년 8월 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민족적 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다.

군사경계선은 동해에서 령해의 기산선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경계선으로 한다. 군사경계구역 안의 수상, 수중, 공중에서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용선박·민용비행기(어로선박 제외)들은 해당한 사전합의 혹은 승인 밑에서만 군사경계선구역을 항행 및 비행할 수 있다.

군사경계선구역 안의 수상, 수중, 공중에서 민용선박, 민용비행기들은 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동과 경제적 리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상기 내용을 보면, 주변 정세를 감안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동해에서는 50마일, 서해에서는 그들의 경제수역을 범위 동 수역 내에서 외국 군용선박·항공기는 활동을 금한다. 민간선박·항공기라도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고, 민간선박·항공기라도 군사적 목적을 가지거나 북한의 경제적 이익에 유해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경제수역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민간선박의 활동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북한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규제대상에서 어선은 제외하고 있으나, 경제수역 선언 시 그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 및 인명과 자원에 유해한 모든 행위를 금한다는 포괄적 규정 고려 시 어선 또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 정세를 감안했다는 것은 앞서 경제수역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수역과 더불어 군사경계구역에서도 그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선박에 대해 항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창위 2011, 25).

그렇다면 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 상에도 없는 군사경계수역을 설정한 이유를 선례 분석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의 선례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1950년 일방적 선언으로 군사경계수역(Military Warning Zone, 軍事警戒水域), 군사항행수역(Military Navigation Zone) 및 군사작전수역(Military Operation Zone)을 설정하였다. 군사경계수역은 발해만 외측의 넓은 해역에 설정한 수역이며, 중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군사항행수역은 항주(杭州)만 외측의 광대한 해역에 설정한 수역으로 외국선박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군사작전수역은 북위 29도 이남에서 대만 이북까지의 해역에 설정한 것인데 출입자의 위험 부담 하(at enterant's own risk)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군사경계수역은 지점에 따라 50해리가 넘는데, 그 성격이 영해가 가지는 배타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 3개 군사적 수역 관련 1955년 정부 보증 하 일본과 중국 간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에서 일본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에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해상안보를 위해 중국이 설정한 일련의 배타적 조치를 존중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의 3개 군사적 수역을 일본이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김찬규 외 2009, 243). 1975년 중-일

정부 간 어업협정 시 군사항행수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동 수역은 폐지하고, 군사경계수역 및 군사작전수역은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의 어업협정 과정에서 군사경계수역이 문제가 되자 그 존속 이유를 일본과 대만 간의 평화조약체결을 내세웠다가 후에는 월남전의 여파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들의 군사경계수역의 존속 이유였던 월남전이 종식한 지금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김찬규 외 2009, 267).

이 밖에 북한 군사경계수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해상방위수역의 선례들을 적지 않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정부는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12개의 방위해역(防衛海域, defence sea area)을 설치하고 선박의 출입을 규제하였는데 그 중에는 연안에서 10해리에 이르는 해역도 있었다. 또한 전쟁 중 무선장비를 보유한 영국 선박(The Haimum)에 대해 일본 함대의 작전구역 밖에서 활동할 것을 명령하는 등 일본은 동 수역 내에서의 권한을 실제 행사하였다(Colombos 1967, 572). 일본이 방위해역 설정 시 전시었음을 감안하여 동 수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1914년 美 해군대학에서 발간된 문헌에서도 러일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 상기 수역 설정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였다(Naval War College 1914, 13 - 20). 미국 또한 이러한 성격의 방위해역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약 30개소,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약 40개소를 지정하고, 모든 선박의 항해를 통제하였다. 이 중 일부는 미국 항구 및 전략거점에서 10해리에 이르는 것도 있었고, 가장 넓은 것은 미국의 3해리 영해 밖에 53해리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⁴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방위수역 설정행위의 근거를 자위(自衛)원칙에 두고 있다.(Colombos 1967, 529)

미국 국무성 자료에 의하면 현재 30개국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해상방위수역을 설정한 선례가 있는데 이들의 폭 및 법적지위는 각기 다르나 대부분 각국의 영해와 일치하고(박춘호 1984, 100), 동 수역의 설정 목적

41) See 12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18). Supplement, pp.13-20.

은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특수한 경우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규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교전국으로서 전시에 주장한 수역도 아니고, 중립국으로서 교전상태를 전제로 중립 의무를 준수한다는 상황도 아니다(이창위 2011, 26). 또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휴전협정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이 금지된 상태이다.

한편,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설정시기가 평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공해상에 설정되는 수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950, 1960년대 강대국들이 공해상에 이러한 수역을 설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임시적, 억제적, 선택적인데 비해,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계속적, 금지적, 포괄적이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Bruce D. Larkin 1980, 283-285).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앞서 언급한 전시 설정되었던 방위수역들 및 평시 설정된 특수구역들과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컨대, 유엔해양법협약 상 군사경계수역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나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즉, 동 협약 상 경계수역 관련 규정에서도 연안국의 군사안보에 대한 권리규정이 없고, 영해 이원으로 관할권 확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특별히 정해놓고 있다. 실제로 연안국의 영해 이원에 군사안보수역 설정에 관한 주장은 1958년 제1차 제네바 해양법 회의나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능 및 목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이창위 2011, 27).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타국 영해에서도 민간선박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북한은 영해 이원에 있는 군사경계수역에서조차 민간선박의 통항마저 사전합의나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정조차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해 수역을 거의 내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찬규 외 2009, 26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군

사경계수역은 중국의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의 군사경계수역의 존속 정당성 또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으로 모든 군사행위가 원칙적으로 정지된 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또한 존속할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의 특징

본 장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수용성 및 해양관할권에 대한 입장 표명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북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태도 및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적 요인을 분석해 본다.

제 1 절 영해제도

영해 폭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2). 왜냐하면 정전협정 시 북한의 관련주장, 구소련에 의한 자료, 외국선박 나포사건 및 북한 내부문헌 자료 등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해폭에 대한 북한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이유는 첫째, 소련 및 중국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소련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시 12해리 영해를 채택하였고, 이미 반세기도 전에 이를 택했다고 했다. 동년 북한과 소련 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조약체결 결과를 보면 북한 또한 소련의 영향으로 12해리 영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이나 해양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연안국이었다. 중국은 건국 후 미소 냉전과 중소 대립이 격화되면서, 미소 양국의 해양 지배에 반대하며 ‘해양안보를 통한 주권수호와 영토보전’을 중요한 해양정책으로 채택해 왔다. 동 정책의 일환이었던 1958년 영해선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중국은 ‘영해의 범위에 대한 국제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해 범위에 대한 주장은 독립국의 주권적이고 일방적 행위’라고 주장하여 해양 강대국들의 반대를 물리쳤다(Jeanette Greenfield 1992, 62-64). 또한 12해리 영해 채택 등이 포함된 중국의 영해선언에 대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지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여느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외부적 요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의 해결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사건발생 즉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즉각적인 무력시위를 시작하고 동시에 북한의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 정치·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특히 소련은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나포된 미국인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요했으나,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 영해 침범을 승인하는 사과문을 받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지 325일만에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갖은 협박과 소련 등 당시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고 있던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1960년대 내내 지속되던 중·소간 분쟁 간 시계추 외교를 반복하던 북한이 이러한 국면을 탈출하고자 주체사상의 일환으로 택한 ‘자주노선’⁴²⁾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12해리 영해 채택은 약소국으로서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중국 및 소련의 영향을 받아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했다기보다는 자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요구인 자주권 수호를 위한 능동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즉, 나라의 힘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기존 3해리보다는 12해리 영해를 채택하는 것이 자국의 자주권 수호 및 영토보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인 것이다.⁴³⁾

영해폭에 대한 북한의 명확성은 낫다(-1). 왜냐하면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해 12해리 영해에 대한 실력을 행사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영해폭에 대한 언급이나 공식적인 법률 제정 및 선포 등은 없었기 때

42) 김태운.(2004.) 주체사상의 지도원칙과 북한의 대외정책.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p.151,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노선’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견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으로, 대외관계에서 자주노선 정책은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43) 실질적으로 3해리 보다는 12해리 영해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첫째, 영해폭을 확장하여 육상에서의 군사적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이로써 좀 더 완비된 지상군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해군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이다. 영해폭에 대한 북한의 명확도가 낮은 이유는 첫째, 인접국인 중국과 소련 양국이 1958년 이미 12해리 영해를 채택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다. 즉, 이는 양국과 해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이 굳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주변국으로부터 당연히 12해리 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1차(1958년), 제2차(1960년) 유엔해양법회의를 거치면서 연안국의 12해리 영해 채택에 대한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높아지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국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둘째, 자국의 해양정책과 법에 대해 한동안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모호성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대외정세 변화에 따라 자국의 안보에 유리한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후술하겠지만, 북한이 영해 이원에 경제수역과 군사경계 수역을 이미 선포하였고, 영해와 동일한 성격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 폭을 선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즉, 별도 선포를 하지 않아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영해기선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은 낮다(-1). 왜냐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기선에 대한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해기선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중국과 소련의 영해 기선에 대한 주장이 북한의 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8년 영해선언에서 직선기선만을 채택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을 일탈한 과도한 직선기선 및 만구폐쇄선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120해리에 달하는 피터대제만에 대한 만구폐쇄선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약 45해리에 달하는 광대한 발해만에 대한 만구폐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전체 해안에 대해 역사적 만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 및 소련은 별다른 항의가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여느 약소국과 같이 실익보다는 충돌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주변국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냐하면 소련은 지리적 요건 상 충돌가능성이 적지만, 중국의 경우 과도한 직선기선 또는 역사적 만에 의한 만구폐쇄선 설정 시 북한과 해양관할권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해기선 주장에 있어 중첩에 의한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국의 경제적·국방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자주노선’과 일맥상통한다.

영해기선에 대한 북한의 명확성은 낮다(-1). 왜냐하면, 북한의 기선은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고, 타국에 의해 추정된 바는 있으나, 북한은 그 이상 수준의 명확한 입장표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 선포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권원요건을 또한 갖추지 못했다. 영해기선에 대한 북한의 명확성이 낮은 것은 첫째, 중국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힘의 법칙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록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전통적 대륙국으로서 과도한 기선설정 및 모호성 전략 추구에 대해 미국과 서방국가의 비난을 견뎌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북한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비록 안으로는 중국과 같이 과도한 기선설정으로 자국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밖으로는 애매하고 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을 우산 삼아 미국 및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직접적인 비난을 피한 것이다. 여느 약소국들은 자국의 실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강대국의 안보우산에 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다르게 해양을 마주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현실적 안보 이익은 물론 중국과 평등한 수준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 안보 실익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법 체계 상 특정국이 과도한 직선기선이나 부당한 기점 적용 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선기선 설정은 국가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영해기선 관련하여 소련은 특별한 이해 충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 북한과 해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상대국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과도한 직선기선과 역사적 만을 주장하고 있고, 미소 양국 패권에 반대하여 제3세계 국가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입장인 북한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해통항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은 높다(+1). 왜냐하면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요건보다는 엄격하지만 군함을 제외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은 허용하기 때문이다. 군함에 대한 무해통항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서 연유하는 문제로 그 합법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무해통항에 대한 북한의 수용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영토와 마찬가지인 영해에서 연안국이 외국군함에 대해 무해통항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1958년 영해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고수해 오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군함의 무해통항을 반대한 이유는 탈식민지화, 자국 해양관할권 확대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및 자국 안보를 위해서였다. 특히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이나 청일전쟁 패배 등에서 군함의 위력을 경험하였던 터라, 이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초창기 북한은 위성국으로서 그 입지가 약하고,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받은 터라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북한은 내부적 정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자주노선’을 추구하며, 외교정책 추진 시 외부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을 침범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군함의 무해통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영토보전 및 자주권에 수호에 유리함으로 이 또한 북한의 내부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무해통항에 대한 북한의 명확성은 낮다(-1). 왜냐하면 북한은 영해에

서의 무해통항에 대해 문헌자료 및 인권의 사건 등을 통해 무역항을 출입하는 외국함정에게 관련규정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 관련법령 제정이나 공식적 언급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해통항에 대한 북한의 명확도가 낮은 이유는 북한은 영해 이원에 설치된 군사경계수역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한 터라 영해 내로 진입하는 선박은 관련사항을 당연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영해 이원에 설치된 군사경계수역에서 타국 선박에 대해 더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을 별도로 선포하지 않아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현실적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제 2 절 경제수역

북한의 경제수역에 대한 수용성은 낮다(-1). 왜냐하면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경제적 관할권을 넘어 포괄적 권리를 주장하는 등 그 취지나 성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수역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또한 동 수역 내에서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위협에 간섭할 권리, 동 수역 내 일체의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안전 통제 권리 등을 주장하는 등 경제적 관할권을 넘어 포괄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이는 기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 공해라기보다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느 약소국과 같이 중국의 관련정책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수동적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중국과 맞닿아 있는 서해의 경우 경제수역 전체에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중국보다 더 강력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국의 이상적 안보를 위해 내부 ‘자주노선’에 따른 북한의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제수역에 대한 명확성은 매우 높다(+2). 왜냐하면 ‘경제수역’에 대해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북한이 관련 공식입장을 표명했고, 타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실력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역에 대한

북한의 명확성이 높은 이유는 주변국의 압력으로부터 자국의 관할수역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공식화되자 주변국들이 너도나도 200해리 선포를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식적 발표를 하지 않았던 영해폭과는 다르게 북한도 같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이는 동 수역이 영해와 다르게 주변국과 중첩될 우려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분쟁 발생 시 동 수역에 대한 권리주장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수역이 영토로부터 가장 이원에 있는 수역이지만, 공해라기보다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한 중요한 관할해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군사경계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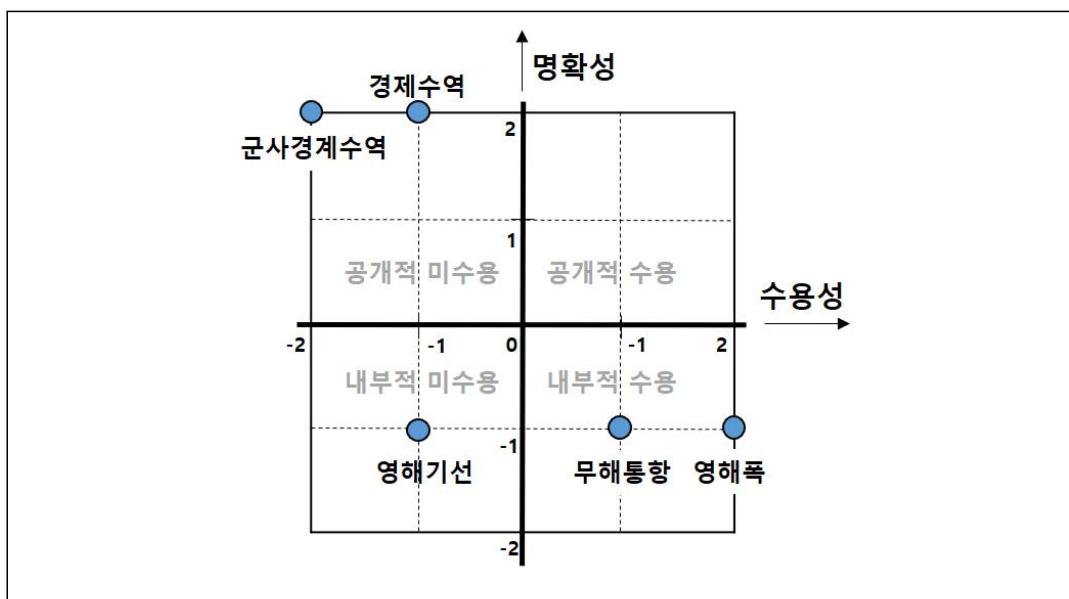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낮다(-2). 왜냐하면 유엔 해양법협약 상 군사경계수역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나 유사한 개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경계수역을 설정한 이유는 자국 영토 보전을 위해 미비한 해군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즉 자국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토보존인데, 북한의 미비한 해군력은 12해리로 확장된 영해를 경비하는 것도 버거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영해이원에 군사경계수역을 설정하여 외국선박 및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는 등 거의 영해 수준으로 규제함으로써 영토 방어를 위한 축차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또한 ‘자주노선’의 일환으로 자국의 구체적 설정에 기초한 독자적 정책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명확성은 매우 높다(+2). 왜냐하면 군사 경계수역을 설정함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명확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나아가 영해로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군사경계수역 설정목적은 ‘경제수역을 군사적으로 지키기 위함’이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 내에

서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모두 주장 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군사 경계수역 내에서 영해 내지는 내수에 벼금가는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과의 어업수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수역 선포 전 이미 1966년 이래 일본 어선에 대해 70해리 어업수역을 적용해 왔던 북한은 군사경계수역 설정을 이유로 일본과 어업수역 협상 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등 협상 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려 했을 것이다.

상기 각 범주별 분석결과를 좌표평면 상 도식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수용성 및 명확성 분석결과



제 4 절 소결론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해폭 및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관련규정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수용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나, 군사경계수역 및 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과 다른 독자적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해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게 설정하고, 공개적으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대

한 수용 결정 시 대외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해양관할권 관련 제도 수용 시 내부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 안보’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즉, 정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일환으로 채택된 ‘자주노선’에서 중시하는 영토 보전, 자주권 수호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하였다. 즉 중국, 소련 등 주변국의 영향이 있으나, 북한은 내부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동 협약이 자국의 이상적 안보실익에 부합하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수용하며, 이를 자국 실정에 맞춰 변형 또는 창출하여 적용한다. 수용적 측면에서 안보적 요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언뜻 보면 여느 약소국과 동일한 양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적 요인에 내부를 적응시키는 수동적 양상보다는, 내부요인에 맞게 대외적 요인을 적응시키는 능동적 양상을 보인다. 즉, 영해 이원의 수역인 경제수역과 군사 경계수역의 영해화, 과도한 영해기선 설정으로 인한 만의 내수화 등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통해 영토를 보전하려는 ‘이상적 안보실익’ 획득을 위한 북한의 의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수용성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수용태도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1955년 평양에서 발표된 ‘국제법의 민주주의적 원칙들의 공고 발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이라는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김진태 1955, 152).

공화국이 승인하여 적용하는 국제법의 규범들과 원칙 제도들은 공화국의 국내법과는 다른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들의 국내법과 달라서 현대 국제법을 그의 모든 원칙들과 규범제도들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 간에서 전적으로 통일된 그리고 확정된 원칙들과 규범들을 가진 완성된 법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상기 논문에 의하면 북한은 국제법 중 그들이 승인한 것만 받아들이는 선택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제법상 원칙과 규범제도들은 모든 국가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제법 규범 중 그들이 필요한 규범만을 선택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의 수용성 결정요인과 다르게 북한은 해양관할권에 대한 대외적 입장 표명 시 내부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요인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해양관할권 관련 입장에 대한 표명의 명확성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정세를 고려한 자국의 현실적 안보실익’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수역을 군사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해양법협약에도 존재하지 않는 군사경계수역을 설정하는 등을 통해 자주권 수호를 위한 이상적 안보실익을 추구한다. 한편, 대외적으로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으로 인한 주변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의 주변정세 변화에 동 수역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현실적 안보실익을 추구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같이 과도하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여 영토보전을 위한 해양관할권 확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관련입장에 대해 항구하는 모호성 전략을 구사하면서,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중국에 편승하여 직접적인 비난은 피한다.

좌표평면 상 경제수역/군사경계수역은 명확성이 매우 높지만, 영해폭, 영해기선 및 무해통항에 대한 명확성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언뜻 보면, 가장 이원에 있는 수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자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로써 영토보전을 위한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해양정책과 법에 대해 한동안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모호성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외부정세 변화에 따라 자국의 안보에 유리한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수용 시는 여느 약소국과 다르게 정치이데올로기라는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외부적 요인을 적응시키는 능동적이고 독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관련입장을 표명 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여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대국의 입장에 편승하거나, 주변국의 입장표명에 대해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약속국의 행태를 보였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할권에 대해 북한이 보이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관할권을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여부에 따라 구분 후 세분화하여 총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5가지 범주에서의 북한의 태도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수용도와 해당 관할권에 대한 입장표명의 명확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영해 폭에 대해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12해리 영해를 채택하면서도 영해 폭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는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에는 12해리 영해와 관련하여 북한의 이렇다 할 주장은 없었고, 주로 타국의 추정에 의해 그들의 태도를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푸에블로호 선박 납포 사건 등 북한의 실력 행사를 통해 주변국들이 북한의 12해리 영해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 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영해 폭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영해 폭에 대한 공식 발표 및 선포 등은 없었다. 다만, 자국의 지리적, 경제적, 국방상 사정에 맞게 영해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지지했을 뿐이다.

두 번째로, 영해기선에 대해 북한은 원칙적 기선 설정방식, 기점의 정확한 좌표 등 기선 관련 구체적 언급 없이 ‘해양을 가진 국가는 지리적, 경제 및 국방상 이익,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영해기선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이 언급한 조건 중 국방상 이익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기본 고려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과도하게 직선기선을 그어 광범위한 구역의 내수화 및 역사적 만에 의한 만구폐쇄선을 주장하나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북한의 기선은 타수역 선언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고, 타국에 의해 추정된 바는 있으나, 그 이상 수준의 입장 표명은 없었고, 역사적 만에 대한 공

식적 선포 또한 없었다.

세 번째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인 법령 제정이나 선포는 없고, 여러 문헌자료, 외국선박 나포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타국과의 관계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연안국의 법과 규정을 지키고, 연안국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해통항을 할 수 있으며, 군함은 특별허가를 요구하는 등 무해통항 관련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 번째로, 경제수역에 대해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오랜 투쟁으로 성취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제적 관할권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넘어 '주권'을 의미하는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수역과 동 수역 내에 설치된 군사경계수역 내에서의 포괄적 제한규정에 의거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선박의 자유항행조차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수역에 대해 거의 영해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유엔해양법협약 상에 존재하지 않는 군사경계수역에 대해 주변정세 고려 경제수역을 보위하고,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설정했다고 한다. 1977년 8월 1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동해는 50마일, 서해는 경제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하고, 민간 선박활동 시도 사전 동의 및 승인이 필요하며, 군함 포함 군사목적을 가진 민간 선박도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경제적 이익에 침해하는 활동 금지라는 포괄적 규제를 두고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등 거의 당해 수역을 내수화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존재하지 않는 동 수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중국, 북한의 해당 수역은 존재의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각 범주별 상기 내용에 나타난 수용성 및 명확성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수용 시에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내부적 요인의 영

향을 받아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 안보를 추구하고, 그 양상은 여느 약소국과 다르게 능동적이고 독창적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관련입장 표명 시는 타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대국의 입장에 편승하거나 주변국이 취하는 입장을 살피는 등 주변정세의 영향을 받아 현실적 안보이익을 추구하며, 그 양상은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약소국의 행태를 보였다.

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수용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해양에서의 교류와 협력 관련 정책 수립 시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대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명확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북한의 경우 수용성과 명확성을 결정하는 요인의 상이로 인해 두 기준 간 상관관계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수용성 및 명확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기준 모두 ‘안보실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둘은 서로 다르다. 수용성의 경우 내부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자국 중심의 ‘이상적 안보실익’, 명확성의 경우 외부 주변정세를 고려한 ‘현실적 안보실익’이 결정요인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특이한 정책이나 행동을 일삼는 예측불허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내부적 결정과 다르게 외부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 활용 등 나름대로의 철저히 계산된 결과에 따라 대외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남북 간 해양에서의 교류·협력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우리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에서의 협력과 해양관할권 관련 문제에 남·북한 공동대응을 위해 남·북 간 동일한 해양법체계 마련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협력과 해양관할권 관련 문제

에 대해 타국을 상대로 남·북이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남·북 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취지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한 우리와 달리, 북한은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을 했지만, 비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동·서해안 전체에 유엔해양법협약을 일탈한 과도한 기선 및 심지어 동 협약에 없는 군사경계수역까지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이 해양에서 원활히 협력하고, 해양에서 타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남·북의 공동대응을 통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해양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즉 보통 국가와 같이 수용성과 명확성이 정의 상관관계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셋째, 남·북간 해양 관련 학술교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과거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상생, 공영을 위한 원-원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의 해양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남·북 간 해양법 관련 연구 교류 등 상호 학술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해양정책이나 관련 법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학문적 연구결과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연구자료 획득이 매우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관할권 관련 각 제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 시 입수 자료 제한으로 주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신자료를 획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김대순.(2006). 국제법론. 삼영사
- 김동수.(2018). 대한민국의 해양권의 보장을 위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실효적 관리방안,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욱.(2010).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학술정보(주)
- 김정건.(1968). 해양법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관한 고찰. 법률연구 제4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pp.325-352
- 김종민.(2013). 약소국의 대강대국 외교정책에 관한 고찰 : 특징과 한계. 컬쳐 컨버전스 제4권 제1호, pp.101-120
- 김찬규.(1978), 해양법에 대한 북한의 태도연구(상), 정경연구 6월호
- 김찬규.(1982), 북한의 경제수역에 대한 고찰. 북한법률행정논총 제5집. 서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pp.91-109
- 김찬규.(1988).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북한연구.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
- 김찬규.(1992). 북한 국제법 추세,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서울:고려대, pp.301-317
- 김찬규.(1995).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북한법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 김찬규.(1994). 중국의 영해법과 기선. 국제법학회논총 1994년 6월호, pp.17-35
- 김찬규 · 이규창.(2009). 북한 국제법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김현수.(2010). 해양법 총론. 청목출판사
- 김태운.(2004.) 주체사항의 지도원칙과 북한의 대외정책. 정치 · 정보연구 제7권 1호, pp.135-159

- 박춘호.(1984), 북한의 해양법 문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6집. 서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pp.83-124
- 송병진.(2014).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희철.(2014). 중국의 해양관련 법제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東西研究 제26권 4호, pp.1-36
- 이규창.(2009). 북한의 국제법관. 파주:한국학술정보(주)
- 이규창.(2012). 북한의 국제법관Ⅱ. 파주:한국학술정보(주)
- 이병조 · 이중범.(2008). 국제법신강, 일조각
- 이석용.(2003). 국제법, 세창출판사
- 이석용.(2015).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 사마출판
- 이석용.(2016).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일감법학 제33호, pp.189-217
- 이석우 · 신창훈.(2010). 북중 · 북러 해양협정대응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장희.(2004). 북한의 국제법 일반에 대한 동향과 전망. 북한법연구 제7호. 북한법연구회, pp.237-263
- 이창위.(1995). 영국 · 노르웨이 어업사건. 아세아연구 38(2), pp.163-174
- 이창위.(2009).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와 국내적 수용, 해사법 연구 (21권 2호), pp.251-283
- 이창위.(2011). 북한의 영해, 경제수역 및 군사수역에 대한 고찰. STRATEGY21, 통권 제27호(Vol.14 No.1), 해양전략연구소, pp.5-31
- 이창위.(20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pp.119-140
- 정종섭.(2011). 헌법학원론(제6판). 박영사
- 최종화.(2004).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북한문헌>

김영철 · 서철언.(1988). 현대국제법연구.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92). 국제법학(법학부용)

김진태.(1955). 국제법의 민주주의적 원칙들의 공고 발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8·15 해방 10주년 기념 법학논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박영수, 정명선, 방영애.(1985). 국제법 및 해운법 참고서(법학부용). 평양: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1971). 법학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법학연구소.(2002). 국제법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최금숙.(2004).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 제50권 제4호

<외국문헌>

Anon.(1994). "Largest-Scale Military Naval Exercise Held Off Zhejiang." BBC Summary of World Broadcasts(reported on LEXIS-NEXIS, 1994/09/17)

Ashley Roach and Robert W. Smith.(2000). Straight Baseline The Need for a Universally Applied Norm.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31, pp.47-80

Bruce D. Larkin.(1980). East Asian Ocean Security Zones. Elisabeth Mann Borgese and Norton Ginsburg. Ocean Yearbook Vol II, pp.282-301

C. John Colombos.(1967).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6th rev. ed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in 62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86), pp.612–644

Digest of International Cases on the Law of the Sea.(2007)

D.P.O' Connell.(1983). Int'l Law of the sea. Vol.1

D.P,O' Conne.(1982). The International Law fo the Sea. vol1

Eric Donnelly.(2004). The United States - China EP-3 Incident :

Legally and Realpolitik. Jourcal of Conflict of Security Law, pp.25–42

Fisherues Case–United Kingdom v. Norway–, Judgment of December 18th, 1951, ICJ, Reports of Judgements

ICJ report.(1951). Fisheries case, Judgement of December 18th

James N.Rosenau.(1981). The study of Political Adaptation. B.Y: Nicholas Publishing Company

Jeanette Greenfield.(1992).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Clarendon Press oxford

K. Hakapaa and E. J. Molenaar.(1999). Innocent Passage - Past and Present. Marine Policy. Vol. 23, pp.131–145

Mr.Vo Khanh.(2012). the law of the vietnam territorial sea, The 20th Anniversary of The Law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Confer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Research Institute

Official Documents(1969), Release of Crew of USS Pueblo,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4, pp.198–199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1958)

Official Records o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1975). Vol. II

Robert O. Keohane.(1969).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p.291–310
-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EEZ) Disputes Involving China : Issues for Congres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m R42784, Washington.D.C.(2015)
- Rothwell. Donald R and Tim Stephens.(2010).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 Sir Robert Jennings & Sir Arthur Watts.(1992).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England: Longman
- UNCLOS III Official Record. vol.17.(1984)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1996). Straight Baseline and Territorial Sea Claims : China. Limits in the Seas NO.117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m R42784, Washington.D.C.(2017)
-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Freedom of Navigation (FON) Report for Fiscal Year (FY) 2017
- US v. State of Alaska case.(1975). in 14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 Sir Robert Jennings & Sir Arthur Watts.(1992).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England: Longman
- U.S. Naval War College, International Law Situation(1914)
- William E, Butler.(1969). The Pueblo crisis : Some Critical Reflection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p.7–13
- Yoshifumi Tanaka.(2012).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study on law of the sea of North Korea

– focusing on attitudes toward
maritime jurisdiction –

Yang Cheong-s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8,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Korean peninsula with unprecedented action for the escaping of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Particularly, in order to alleviate the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o alleviate the war risk, all hostile acts against the other side, the peace zone in the West Sea, and the guarantee of safe language were mentioned.

On the other hand, the adoption of the UNCLOS in 1982 has made efforts to expand and maintain the maritime jurisdiction directly linked to the national interests. North Korea's attitude toward the maritime jurisdiction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order to facilitate smooth cooperation and mutual development of policy alternatives in the future whe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improves, It is time to review.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ttitude toward the maritime jurisdiction in North Korea. As a result, when North Korea accepts the UNCLOS, it pursues ‘ideal security’ centering on its own country under the influence of inter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ideology, Unlike any weaker country, was active and original.

On the other hand, in expressing related positions outside the country, pursuing ‘realistic security interests’ by influencing the surrounding situation, such as hopping a powerful country or taking a posi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avoid direct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and minimize sacrifice, And the behavior of the typical weak countries.

Therefore, we should prepare strategic policy alternatives in consideration of this dual attitude of North Korea in future exchanges and cooperation at the sea with the North.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same legal system of the sea based on the UNCLOS. In additio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which had been a zero-sum game in the past, is a time of need for a win-win strategy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erefore, mutual academic exchanges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learn the other’s attitude toward maritime jurisdiction and prepare for cooperation.

Keywords : North Korea, Law of the sea, UNCLOS,
Maritime Jurisdiction

Student Number: 2015-24364